

#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

1999. 9. 15  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1999년 9월 1일 제출
- 회 부 : 1999년 9월 1일

3. 제안이유

- 대학관련 조례·규칙 통합
- 단일 조례로 제정하여 대학운영에 효율화를 기함

4. 주요골자

- 대학의 운영을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이념과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정함 (안 제2조)
- 대학의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·기능 등을 정함 (안 제3조~제11조)
- 대학운영특별회계의 설치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12조~제19조)
- 장학기금의 설치 및 기금조성, 기금운용, 기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0조~제26조)
- 대학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추천 및 임용계획 수립시 반영사항을 정함 (안 제27조)
- 대학운영의 감독과 학과설치 및 폐지, 학생정원의 증감등 도지사 승인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8조)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은

- 옥천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운영위원회 설치운영, 대학운영특별회계 설치운영, 장학기금 조성운영 등에 관하여 기존에 조례나 규칙으로 나누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안제15조제3항의 수험료를 학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감안해 볼 때 최소한 안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입학금·수업료의 경우와 같이 학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며,
- 안제27조 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추천규정에 대하여는 우수학생 유치등 대학의 발전과 도립대학이라는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, 다만 타 대학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
- 또한 직명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제9조중 “대학담당 업무과장이”를 “대학업무 담당과장이”로 하고, “대학담당 업무담당이”를 “대학업무 담당주사가”로 하며, 안 제23조중 “학생업무 담당으로”를 “학생업무 담당주사로”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